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문진사항

가. 질병력 및 가족력

나. 직업력 및 노출력

다. 피폭증상의 유무

라. 그 밖의 특이사항

2.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

가. 임상진찰: 눈, 피부, 신경계 및 조혈계(혈구형성계통) 등의 증상

나. 혈액검사: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, 적혈구 수, 백혈구 수, 혈소판 수

3. 추가검사(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가. 말초혈액도말검사

나. 세극등현미경검사

다.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

제121조제2항제2호 단서 중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”을 “제

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문진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
2. 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
3.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

별지 제10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로 정하여 사용 중인 건강진단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04호의5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[]방사선작업종사자 []수시출입자
[]방사선 관계 종사자

건강진단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진단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직종(면허종별)
	소속 기관 및 부서명		근무시작일
검사일자			
문진사항	질병력		
	가족력		
	직업력 및 노출력(※ 작업 장소·내용·기간·피폭선량 등을 적습니다)		
	방사선 피폭증상 유무 : []없음 []있음 (※ 증상이 있는 경우 상세내용을 하단에 적습니다)		
	그 밖의 특이사항		
임상진찰	(※ 눈/피부/신경계/조혈계(혈구형성계통) 등의 증상을 적습니다)		
혈액검사	혈색소 양(Hb)	g/dl	적혈구 수(RBC) $10^6/\mu\text{l}$
	백혈구 수(WBC)	$10^3/\mu\text{l}$	혈소판 수(PLT) $10^3/\mu\text{l}$
추가검사	말초혈액도말검사, 세극등현미경검사,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		
종합소견			

[]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항제2호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제1항 또는
[]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 및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또는
[] 「수의사법」 제17조의3제3항 및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에 따라 위
와 같이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담당 의사명:

면허번호:

연락처:

의료기관명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(건강진단) ①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. 1. <u>직업력 및 노출력</u> 2. <u>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</u> 3. <u>임상검사 및 진찰</u> 가. <u>임상검사: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,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</u> 나. <u>진찰: 눈, 피부, 신경계 및 조혈계(혈구형성계통) 등의 증상</u> 4. <u>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	제121조(건강진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문진사항</u> 가. <u>질병력 및 가족력</u> 나. <u>직업력 및 노출력</u> 다. <u>피폭증상의 유무</u> 라. <u>그 밖의 특이사항</u> 2. <u>임상진찰 및 혈액검사</u> 가. <u>임상진찰: 눈, 피부, 신경계 및 조혈계(혈구형성계통) 등의 증상</u> 나. <u>혈액검사: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, 적혈구 수, 백혈구 수, 혈소판 수</u> 3. <u>추가검사(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 가. <u>말초혈액도말검사</u> 나. <u>세극등현미경검사</u> 다. <u>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</u>

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. 다만,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3. (생 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--- 제1항제1호
나목 및 다목에 대한 문진을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.

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
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
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
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
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
본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
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
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
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

2. 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
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
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

3.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
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
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